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치안실태조사 의무화 및 경찰관서 폐지·축소 시 반영〉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62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09. 22.
3. 회부연월일 : 2025. 0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찰서장 소속으로 두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축소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경찰관서의 신설·폐지 등이 지역별 범죄 발생률 등 실질적인 치안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경찰관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찰관서의 지구대 등이 대폭 축소·폐지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안전이 위협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관서의 폐지·축소 및 경찰공무원 정원 감축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5조의2(치안실태조사의 실시 등)</u> ① <u>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등 경찰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지역별로 인구구성 특성, 사회적약자 규모 및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등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치안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u>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의 소속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치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 ③ <u>경찰청장은 치안실태조사의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u> ④ <u>치안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지구대·파출소 설치를 규정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지·축소 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¹⁾

또한, 경찰청은 지역관서 신설·폐지 시 △정량평가(5대범죄·112신고·인구·면적) △정원·예산·장비 등 기능검토 △심사위원회 종합심사의 3단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훈령·내부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절차로 규정된 것은 아님.

특히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 지구대·파출소가 통폐합되면서 주민들의 체감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공백이 범죄 발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별 치안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경찰관서의 폐지·축소 및 정원 감축 결정에 반영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인력 및 조직운동을 도모하고, 경찰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시행 2025. 9. 23.)

제42조(경찰서) ② 경찰서 하부조직·위치·관할구역 등은 행안부령으로 정함

제43조(지구대 등) ① 시·도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음

③ 지구대·파출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은 시·도청장이 정함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동 개정안은 경찰청의 조직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직과 직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첫째,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규정」²⁾³⁾에 따라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매년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정기직제 개편, 중기인력운영계획, 조직진단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현행 3단계 심사 절차가 개정안의 조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둘째, 「정부조직법」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⁵⁾에

-
- 2)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4)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시행 2023. 10. 12.)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이하 생략)
제8조의2(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계급별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 (이하 생략)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조직·정원을 편성·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 정원조정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도 가능함. 따라서 조사 시기·방식 등을 법률로 강행 규정할 경우, 조직운영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셋째, 경찰관서의 폐지·축소를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범죄 발생 건수 등 정량적 지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필수 공공재인 치안에 대한 접근성, 지역 주민의 안전 체감, 지역 여론, 범죄예방 효과 등 정성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임. 실제로 경찰청 개청(1991년) 이후 경찰서 폐지 사례는 없으며, 최근 5년간(2020~2024) 지역관서 폐지 사례도 10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관서 존폐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설명임.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의무 조사 및 반영 규정을 도입할 경우,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5

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참고자료]

1. 지역관서 신설·폐지 관련 3단계 심사

① (1차 심사) 평가요소 정량평가

구 분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신설	5대범죄·112신고· 인구·면적	▷ 평가요소 중 3개 이상이 시도청 내 동일 급지 지역관서 평균의 70% 이상
폐지		▷ 평가요소 중 3개 이상이 시도청 내 동일 급지 지역관서 평균의 30% 미만

② (2차 심사) 시·도청의 신설·폐지 계획에 대한 분야별 기능 검토

-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정원조정계획의 적절성, 적정 지역경찰 관서수 등
- ▷ **재정담당관실** : 소요예산·추진일정 적절성, 他 국유재산 활용 가능성 등
- ▷ **장비담당관실** : 치안수요, 보유장비 현황에 따른 배정의 적절성 등

③ (3차 심사)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위원장 : 기획조정관)

△ **치안수요** △ **인력·관할 적절성** △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신설·폐지·형태변경 등 결정

2. 최근 5년간 지역관서 폐지 사례

연번	연도	시도청	경찰서	관서명칭	폐지 후 관할
1	2020*	서울	용산	이촌파출소	한강로지구대
2		전북	완주	경천파출소	화산파출소
3		전북	순창	적성파출소	동계파출소
4		경북	포항북부	중앙파출소	덕산파출소
5		경북	포항북부	죽도1파출소	죽도파출소
6		경북	안동	녹전파출소	도산파출소
7		경북	군위	고로파출소	의흥파출소
8		경북	군위	우보파출소	의흥파출소
9		경북	고령	우곡파출소	성산파출소
10		경남	하동	고전파출소	금성파출소

*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정원 3인 ↓ 지역관서 폐지를 추진했던 시기

3. 시도청 별 1인당 담당 인구, 관할면적, 관할인구

구 분	관할인구(명) <'24.12월>	관할면적(km ²) <'24.12월>	경찰정원(명) <'25.8월>	1인당 담당인구
전체	51,217,221	100,449.3	129,265	-
서울	9,331,828	605.20	30,526	306
부산	3,266,598	771.31	9,262	353
대구	2,363,629	1,499.47	5,844	404
인천	3,021,010	1,067.09	6,947	435
광주	1,408,422	500.97	3,597	392
대전	1,439,157	539.78	3,275	439
울산	1,098,049	1,062.83	2,755	399
세종	390,685	464.96	934	418
경기남부	10,623,231	5,930.54	18,690	568
경기북부	3,071,454	4,269.19	6,837	449
강원	1,517,766	16,830.84	4,567	332
충북	1,591,177	7,407.01	3,892	409
충남	2,136,574	8,247.54	5,118	417
전북	1,738,690	8,073.34	5,064	343
전남	1,788,819	12,362.33	5,691	314
경북	2,531,384	18,424.14	6,704	378
경남	3,228,380	10,542.53	7,402	436
제주	670,368	1,850.27	2,160	310